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0
----------	-----

2024. 10. 14.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18. 김형곤 의원 대표발의(7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3. 8. 31.)  
“ 심사보류 ”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4.)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형곤 의원 )

전통시장 등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배달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사업 신설(안 제3조제12호)

나. 차량지원, 배달인건비 등 지원사업 신설(안 제3조제13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조치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조성수 )

##### 1.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유 등

□ 복지도시위원회 김형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목적은 주차장 확보 및 주차 비용 지원, 배달서비스 등 위한 차량지원 및 인건비 지원 그리고 일부 자구정비 등을 위한 것임.

##### 2. 주요 내용 등의 검토

□ 현행 조례안은 총 7개 장 3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안 제2조(정의)의 자구수정, 안 제3조(지원사업) 12개 중에 2개 사항 추가, 안 제26조(시설물의 관리) 제3항의 자구 정비 등임.

① 먼저, 안 제2조와 안 제26조 관련 자구(字句, 글자와 글귀) 정비사항을 검토해 보면, 안 제2조제1호 중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의 괄호 안의 “시장등” 이 “시장” 과 “등” 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이후에 표기되는 다수의 조문 중의 표기들은 “시장∨등” 으로 되어 있어 이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덧붙여 제2호 중의 “시장등” 도 띄어쓰기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2호 중 영위하는의 영위는 삭제하는 것임.

○ 안 제26조는 내용 중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 을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법 시행령 제9조제6항” 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조문의 인용 조항을 검색할 경우, 법 시행령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례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기술

적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표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 이는 개정사항이 아니라, 법조문 입력 시 밑줄 입력이 되지 않아 화면 게시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니, 해당부서는 조문을 홈페이지 게시할 때, 다음과 같이 밑줄 표기를 정정해 달라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할 것임.

현행 게시 상태	개선방안
법 시행령 <u>제5조제4항</u> 및 <u>제9조제6항</u>	법 시행령 <u>제5조제4항</u> 및 <u>제9조제6항</u>

- ☞ 중간의 “및” 에까지 한 줄로 밑줄이 쳐져야 법 시행령의 조문이 시현될 것임. 예컨대, 본 조례 제31조제1항 서두 중 법 인용 표기를 보면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및” 까지 밑줄을 표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자구수정 대상은 안 제26조는 제외하고 안 제2조제1호와 안 제2조제2호까지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일부개정안	수정검토
<p>제2조(정의)</p> <p>1. “상인”이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 등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시장등의 구역 안에서는 지붕이 없더라도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 등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볼 수 있다.</p>	<p>제2조(정의)</p> <p>1. “상인”이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 등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u>시장∨등의</u> 구역 안에서는 지붕이 없더라도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 등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볼 수 있다.</p>
<p>제26조(시설물의 관리)</p> <p>③ 구청장은 시장 등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 또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p>	<p>제26조(시설물의 관리) ※ <b>현행 유지</b></p> <p>③ 구청장은 시장 등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u>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u>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 또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p>

## ② 현행 조례는 당초 제3조(지원사업)<sup>1)</sup>의 구성을 법 제65조제4항<sup>2)</sup>의 상인회

1)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상인회에서 수행하는 사업
2.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 기술적용을 통한 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3. 거리축제 및 행사의 개최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4. 시장 등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지원 사업
5. 시장 등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사업
6. 화재위험 점검·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재보험 가입 보조사업
7.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
8. 재난·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및 지원 사업
9.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
10. 창업 및 경영지원을 통한 청년상인 장기영업 활성화 지원 사업
11.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65조(상인회)<sup>4)</sup>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지원 사업과 시행령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sup>3)</sup> 관련 사업 및 발굴사업 등을 혼합·정비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주요 지원사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타지자체와 달리 지원사업의 구체화를 이루고 있음.

-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비용 지원 사업과 배달 서비스를 위한 차량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추가한 것임.
- 안 제3조제12호는 시장 등 이용고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목적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비용 지원사업인데, 9천만원의 예산으로 아래와 같이 주차비를 지원하고 있어 그 근거설정이 필요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것임.

시장명	주차장	소요예산(단위:천원)	산출근거
영동전통시장	GS타임 주차장	12,960	3,600원×10매×30일×12개월
강남개포시장	개포5단지 공영주차장	45,360	3,600원×35매×30일×12개월
도곡시장	두리주차장	31,680	4,000원×22매×30일×12개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7. 구청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 및 제14조 관련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 다만, 강남구 주차비용 지원 근거가 별도의 주차장 조례가 있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전통시장 지원 관련 조례 내에 명문화하는 것을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3)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임.

- 안 제3조제13호는 서울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를 근거로 공모형 배송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여 근거 신설이 불필요할 수도 있으나, 입안자의 조례안 입법 의도는 “차량지원과 인건비” 반영을 강조하고 있어 서울시 배송사업과 다소 지원내용의 차이가 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b>상인</b> 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b>공동사업</b> 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 물류, <b>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b>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참고로, 2023년 서울시 전통시장 배송사업은 1억14백만원 수준임.
  - 2023년 선정 시장 : 총 8개 자치구, 12개소 시장, 금114,408천원 지원
  - 시장명 : 관악구(인헌시장), 광진구(중곡제일시장), 은평구(연서시장, 대조시장), 동대문구(청량리종합시장), 도봉구(창동신창시장, 방학동도깨비시장), 양천구(목동깨비시장, 목사랑시장, 신영시장), 금천구(현대시장), 용산구(용문시장)
  - 서울시 공모사업 배송수수료 지출가능 범위
    -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퇴직금, 출장비
    - 차량 수리비,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장보기 및 배송인프라에만 재투자 가능
    - 상인회 운영비 등 사업 목적 외 사용 불가
-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강남구 부지가격 등을 볼 때, 시장부지 활용을 통한 주차타워 등의 건립은 상당한

검토와 시간 그리고 재원을 필요로 할 것이고, 배송사업을 서울시 공모형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본 배송사업은 상인회의 강력한 공동사업 의지와 준비가 없이는 추진이 불가할 것임.

- 이러한 현안해결이 필요함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추구하는 추가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체계에 부합할 것임.
  - 다만, 상위법령의 맥락과 현재 강남구가 시행하는 사업 등을 감안하고 조례안 문구의 간결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검토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 다음 면에 제시된 수정검토와 같은 문구를 조정하는 이유는 “주차 환경개선” 속에 주차장 확보가 포함되고, 주차 비용 지원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기에 문구를 간단·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 택배 배달을 염두에 두는 조례 일부개정안이라면 “배달서비스” 라는 용어보다 “배송서비스” 가 더 적합할 것임.
  - 또, 관주도의 상권지원 이외에 “시장 등의 상인회” 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정산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3. 논의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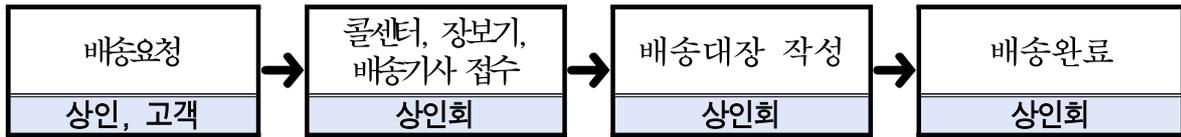
- 앞서 제시된 검토 및 토론 사항 등을 참고로 대표발의 의원과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의 심도 있는 결정이 필요할 것임.

일부개정안	수정검토
<p>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상인회에서 수행하는 사업</li> <li>2.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 기술적용을 통한 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li> <li>3. 거리축제 및 행사의 개최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li> <li>4. 시장 등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지원 사업</li> <li>5. 시장 등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사업</li> <li>6. 화재위험 점검·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재보험 가입 보조사업</li> <li>7.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li> <li>8. 재난·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및 지원 사업</li> <li>9.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li> <li>10. 창업 및 경영지원을 통한 청년상인 장기영업 활성화 지원 사업</li> <li>11.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li> <li>12. 시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사업</li> <li>13. 시장 등의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 지원, 배달 인건비 등 지원사업</li> <li>1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3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상인회에서 수행하는 사업</li> <li>2.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 기술적용을 통한 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li> <li>3. 거리축제 및 행사의 개최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li> <li>4. 시장 등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지원 사업</li> <li>5. 시장 등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사업</li> <li>6. 화재위험 점검·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재보험 가입 보조사업</li> <li>7.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li> <li>8. 재난·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및 지원 사업</li> <li>9.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li> <li>10. 창업 및 경영지원을 통한 청년상인 장기영업 활성화 지원 사업</li> <li>11.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li> <li>12. 시장 등의 이용 고객을 주차 환경 개선 및 주차 비용 지원사업</li> <li>13. 시장 등의 배송서비스를 위한 차량 및 인건비 지원 등 상인회 공동사업</li> <li>1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회가 제1항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세부내용>

○ 배송서비스 운영방법

- 운영체계



- 시장별 배송거리에 따른 배송료(안) : 시장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

배송거리	1km 이내	~ 2km	~ 3km	기타
배송수수료	1천원~2천 원	2천원~3천 원	3천원~4천 원	5,000원 이상

○ 배송수수료 지출가능 범위

-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퇴직금, 출장비
- 차량 수리비,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장보기 및 배송인프라에만 재투자 가능
- 상인회 운영비 등 사업 목적 외 사용 불가

○ 지원현황('14년~'22년)

구분	지 원 시 장	유 형			지원금액(백만원)				
		콜	배	장	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계		139	205	80	7,178	1,406	3,318	1,002	1,563
'22	12개구 18개 시장	13	18	6	837	0	504	157	176
'21	16개구 27개 시장	13	25	14	926	78	534	183	209
'20	16개구 26개 시장	19	27	6	1,065	153	530	174	208
'19	16개구 29개 시장	28	20	5	934	162	523	144	138
'18	15개구 26개 시장	15	26	5	1,046	163	432	141	310
'17	13개구 21개시장	14	22	7	703	133	319	79	172
'16	14개구 20개시장	15	23	8	715	181	335	41	158
'15	13개구 18개시장	14	25	15	710	415	93	83	119
'14	10개구 14개시장	8	19	14	242	121	48	-	73

## □ '22년 배송실적 (1월~9월)

연번	자치구	시장명	시비 지원액 (천원)	배송실적(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계	일평균	
1	종로구	통인시장	29,448	183	158	183	199	234	223	203	211	202	1,796	9	
2	용산구	용문시장	36,252	-	-	209	287	403	395	357	411	379	2,441	16	
3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29,448	235	193	255	365	401	317	289	268	295	2,618	13	
4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29,448	204	139	172	171	193	202	193	148	178	1,600	8	
5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15,840	185	126	95	124	160	181	144	157	184	1,356	7	
6		창동신창시장	29,448	281	233	320	302	329	292	245	278	273	2,553	13	
7	은평구	연서시장	29,448	290	209	289	242	290	292	297	313	300	2,522	13	
8		대조시장	36,252	267	369	222	249	278	246	219	181	172	2,203	11	
9	마포구	망원시장	36,252	214	170	215	211	212	118	169	188	199	1,696	9	
10	양천구	신영시장	29,448	217	206	269	280	283	299	282	255	262	2,353	12	
11		목사랑시장	36,252	482	214	249	245	323	311	322	263	296	2,705	14	
12		목동개비시장	36,252	309	261	322	311	310	288	308	320	284	2,713	14	
13	강서구	송화벽화시장	26,600	-	-	-	38	166	199	152	183	166	904	7	
14		화곡본동시장	15,840	209	139	213	194	217	278	272	213	204	1,939	10	
15	금천구	현대시장	36,252	281	128	199	225	260	298	334	334	283	2,342	12	
16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15,840	135	102	121	119	119	120	125	119	122	1,082	5	
17		인헌시장	15,840	206	223	366	404	551	640	458	463	432	3,743	19	
18	송파구	풍납시장	15,840	229	193	219	220	221	224	242	244	213	2,005	10	
총 계			500,000	3,927	3,063	3,918	4,186	4,950	4,923	4,611	4,549	4,444	38,571	202	

## □ '21년 배송실적 현황

연번	자치구	시장명	시비 지원액 (천원)	배송실적(건)												총계	일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종로구	통인시장	28,512	123	126	128	159	184	202	167	162	172	167	257	214	2,063	8
2	용산구	용문시장	28,512	208	257	289	309	384	535	658	389	325	297	516	397	4,564	17
3	성동구	뚝도시장	15,336	144	124	141	133	135	117	130	121	123	134	122	102	1,526	6
4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18,081	58	69	94	135	144	135	142	142	147	141	206	136	1,551	6
5		중곡제일시장	20,826	212	227	312	283	250	278	272	201	230	228	330	291	3,114	12
6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	20,826	105	116	148	142	133	141	130	127	156	145	201	166	1,710	6
7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28,512	157	216	185	195	199	204	209	144	145	164	176	155	2,149	8
8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15,336	192	72	81	120	134	187	173	171	195	186	342	255	2,108	8
9		창동신창시장	28,512	184	262	296	298	294	287	280	293	295	285	289	350	3,413	13
10	은평구	연서시장	28,512	257	247	309	111	172	177	176	178	248	270	347	331	2,823	11
11		대조시장	35,100	331	369	393	412	357	392	310	298	394	350	625	321	4,546	17
12	마포구	망원시장	24,669	109	113	159	203	225	241	235	168	171	189	243	288	2,344	9
13	양천구	신영시장	28,512	235	247	293	299	285	498	326	327	334	387	408	232	3,871	15
14		목사랑시장	35,100	273	335	463	522	493	336	-	24	408	291	390	327	3,862	15
15		목동개비시장	35,100	321	278	337	342	297	343	347	334	298	294	338	338	3,861	15
16	강서구	송화벽화시장	20,826			175	181	173	150	228	187	149	179	206	170	1,798	7
17		화곡본동시장	21,924		179	166	149	173	166	143	141	167	206	193	214	1,897	7
20	구로구	남구로시장	15,336	235	217	241	284	295	332	261	320	240	248	344	342	3,359	9
21	금천구	현대시장	14,837	92	176	117	201	219	-	301	253	270	246	322	87	2,284	7
22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21,924	139	139	201	179	170	205	119	123	118	121	122	120	1,756	5
23		인헌시장	15,336	291	369	339	413	527	727	647	396	649	482	766	514	6,114	17
24	송파구	풍납시장	15,336	226	192	237	250	240	245	226	222	216	216	244	249	2,763	8
25	강동구	길동북조리시장	5,702	213	201	180	144	170	199	148	146	215	172	208	142	2,138	6
26		암사종합시장	3,067	1,110	1,267	1,115	1,036	1,257	1,318	1,306	1,050	1,173	1,203	1,316	1,230	14,375	41

※ 일평균 건수는 월평균에서 월 22일 근무(주5일근무)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2023. 8. 31.)

- 질 의 : 개정의 주요 사항은,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사업, 배달 서비스를 위한 차량 지원 및 배달인건비 등 지원사업을 구청장이 지원하는 것으로 보임. 사업 범주나 필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가
- 답 변 :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므로,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일부 시장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음
- 질의과정 중, 개정사항의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효과성 등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됨

###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4.)

- 질 의 :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사업이나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 지원, 배달인건비 등 지원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개정되는 사항의 추진에 한계가 될 것으로 보임. 주차 환경 개선 및 주차비용 지원사업이나 배송서비스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음
- 답 변 : 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수정 의견에 동의함. 상위 법 규정을 고려하여 ‘상인회 공동사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정에 동의함

##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신설되는 지원사항이 입법취지에 맞고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항을 추가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수정안이 제출됨

##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10호

발의일자 : 2024. 10. 14.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 정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근거 법령에 맞춰 정리하고 조례 조문에 규정하지 않은 관련 용어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자 수정함
- 근거 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수정함
- 입법 취지에 맞는 조례의 시행과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 사항의 각 호 규정을 조정하고, 항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함

## 2. 수정내용

- 정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근거 법령의 용어에 맞춰 수정, 정비함(안 제2조제1항,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 정의 조문의 항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준용하는 관련 용어의 근거 법을 명시함(안 제2조제2항)
- 근거 법령에 맞춰 용어를 수정함(안 제3조 제목)
- 지원 사항의 규정을 조정함(안 제3조제1항 제12호, 제13호)

-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항을 신설하고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제3항)
- 조문을 간결히 정리함(안 제26조제3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뜻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르고 그 이외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시장 등””을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시장 등”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2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26조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② 상인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중 “시장 등”을 “시장등”으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 또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을 “경우 법령의”로 한다.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르고 그 이외는 다음과 같다.</p> <p>1. “상인”이란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시업 · 소매업 ·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시장등의 구역 안에서는 지붕이 없더라도 도매업 · 소매업 및 용역업 등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볼 수 있다.</p>	<p>제2조(정의) (생략)</p> <p>1. ----- ----- - “시장 등”----- ----- ----- -----.</p> <p>2. ----- ----- ----- 하는 ----- -----, ----- ----- -----.</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 - “시장등”----- ----- -----.</p> <p>2. (개정안과 같음)</p>

3. “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등의 안과 밖에 설치한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시장의 특성별 구분”이란·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와 같다.

<신 설>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지원사업) -----  
-----  
-----  
-----  
-----.

3. -----  
-----  
-----  
----- 시장등 -----  
-----.

4. (개정안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재정적 지원) ① -----  
-----  
-----  
-----.

1. ~ 11. (생략)

<신설>

<신설>

1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신설>

제26조(시설물의 관리) ① . ②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시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사업

13. 시장 등의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 지원, 배달인건비 등 지원사업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신설>

<신설>

제26조(시설물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1. ~11. (개정안과 같음)

<삭제>

12. 법 제26조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인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물의 관리)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시장 등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 또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③ -----  
-----  
-----  
-----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라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시장등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뜻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르고 그 이외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본문 중 “영위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시장 등”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법 제26조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 1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인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중 “시장 등”을 “시장등”으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 또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을 “경우 법령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르고 그 이외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 등을 <u>영위하는</u>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시장등의 구역 안에서는 지붕이 없더라도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 등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볼 수 있다.</p> <p>3. “시설물”이란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에 따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u>시장</u> 등의 안과 밖에 설치한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p> <p>4. (생 략)</p>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① -----                      - <u>뜻은</u>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하는</u> -----                      -----.</p> <p>3. -----                      -----                      -----                      ----- <u>시장등</u> -----                      -----.</p> <p>4. (현행과 같음)</p> <p>② <u>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u></p>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11. (생략)

1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신설>

<신설>

제26조(시설물의 관리)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시장 등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재정적 지원) ①-----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26조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인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물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시장등-----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 또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 경우 법령의 -----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
----------	-----

발의연월일: 2023. 8. 18.

발 의 자: 김형곤·손민기·한윤수·  
안지연·이동호·노애자·  
강을석 의원(이상7인)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사업 신설 (안 제3조제12호)

나. 차량지원, 배달인건비 등 지원사업 신설 (안 제3조제13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장등””을 ““시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영위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사업

13. 시장 등의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 지원, 배달인건비 등 지원사업

제26조제3항 중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을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법 시행령 제9조제6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르고 그 이외는 다음과 같다.</p> <p>1. “상인”이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u>시장 등</u>”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시장등의 구역 안에서는 지붕이 없더라도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 등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볼 수 있다.</p>	<p>제2조(정의) ----- ----- ----- -----.</p> <p>1. ----- ----- ----- <u>“시장 등”</u> ----- ----- ----- -----.</p> <p>2. ----- ----- ----- <u>하는</u> ----- ----- ----- -----.</p>

3.·4. (생략)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12. (생략)

제26조(시설물의 관리)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시장 등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 또는 「서울특

3.·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사업)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시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사업

13. 시장 등의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 지원, 배달인건비 등 지원사업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26조(시설물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법시행령 제5조제4항, 법시행령 제9조제6항 -----  
-----  
-----

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  
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